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[시행 2016.2.24] [조례 제5152호, 2016.2.24, 제정]

경기도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 DMZ ”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비무장지대를 말한다.
2. “ 접경지역 ”이란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3. “ DMZ 일원 ”이란 DMZ와 접경지역 중 DMZ와 연접한 인근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경기도지사(이하 “ 도지사 ”라 한다)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
1. DMZ 일원의 보존 및 가치 증대
2. DMZ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
3. DMZ 일원의 활성화 및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
4.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
5. 그 밖에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용역을 수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) 도지사는 DMZ 일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DMZ 일원 관련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교류사업
2.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한 행사
3. DMZ 일원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및 정비
4.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운영
5. DMZ 일원 가치홍보를 위한 사업
6. 그 밖에 DMZ 일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위탁 등) 도지사는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(이하 “ 도 ”라 한다) 소속기관, 출연ㆍ출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 등) ① 도지사는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접경지역 관련 시ㆍ군 또는 군부대와 협력할 수 있다.

제8조(예산 지원)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및 제7조에 따른 협력 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은 도 정책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, 이에 반하는 사업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다.

제9조(보조금 관리)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포상) 도지사는 DMZ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, 단체,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「경기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5152호,2016.2.24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